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기와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각 지자체에서 수립·제출하도록 규정한 계획 수립 시기가 서로 달라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의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시기를 상위 법령인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의 계획 수립·제출 시기와 일치시켜 실무 혼선을 막고 행정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